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259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김 윤  
차지호 · 진성준 · 박정현  
이광희 · 이해식 · 김성희  
정춘생 · 송기현 · 민병덕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  
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  
33조제3항·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9호를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개선명령 등) -----<br>-----<br>-----<br>-----<br>-----.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예의 가입                                                                           | 9. <삭 제>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생 략)                                                                     |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1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  
제사업기관

② (현행과 같음)